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3.(금) 18:00  
(지면) 2026. 4. 4.(토) 조간

##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격 가동

- 행정안전부 4월 3일, 신규 민간위원 4명 위촉, 2년간 분쟁 조정 맡아
- 전문성·공정성 바탕으로 정책 추진 과정의 이견 지혜롭게 해소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3일(금)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
-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(간사: 행정안전부)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87조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·조정하는 역할을 한다.

### <지방자치·갈등관리 전문가 4명 위촉, 중앙과 지방의 이견 조율>

□ 제13기 위원장으로는 지방자치와 갈등 관리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배귀희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위촉되었다.

- 이와 함께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,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,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.
- 이번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, 민간위원들은 2028년 3월 4일까지 2년간 중앙과 지방의 이견을 조율하는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.
-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촉한 민간위원 4명과 당연직 위원\* 5명,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지명직 위원(4명 이내)으로 구성되어 사안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.

\* 재정경제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

□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“새롭게 출범하는 제13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지혜롭게 풀어내 주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자치분권지원과	책임자	과 장	서상우 (044-205-3321)
		담당자	서기관	정선금 (044-205-3322)



# 참고 1

##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제13기 위촉위원

사 진	성 명	주요경력	비 고
	배 귀 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송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</li> <li>▪ (前)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</li> <li>▪ (前)한국행정연구원 협력·갈등관리연구단장</li> </ul>	위원장
	신 옥 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</li> <li>▪ (前)한국국가법학회 회장</li> <li>▪ (前)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</li> </ul>	위원
	최 진 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</li> <li>▪ (前)한국갈등학회 회장</li> <li>▪ (前)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회 위원</li> </ul>	위원
	신 대 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</li> <li>▪ (前)청주지방법원 판사</li> <li>▪ (前)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</li> </ul>	위원

## 참고 2

##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개요

### □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87조(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·조정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5조 내지 제111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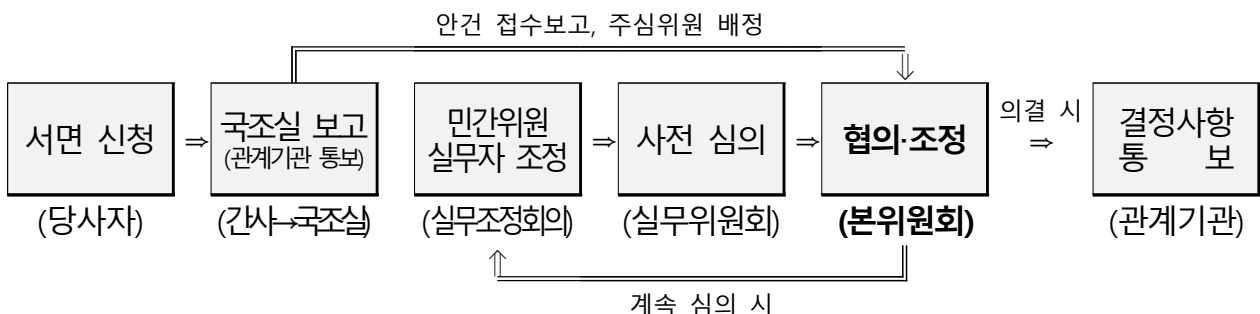
### □ 기능

-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·조정

### □ 구성

- (본위원회) 국무총리 소속('00. 5.13 설치), 위원장 포함 13명 이내
  - 위촉직 : 4명(위원장 포함) / 국무총리 위촉 / 임기 2년
  - 당연직 : 5명(재경부·행안부·기획처 장관, 국무조정실장, 법제처장)
  - 지명직 : 4명 이내(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)
- (실무위원회)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실무위원
  - 위원장 : 국무조정실장
  - 위 원 : 재경부·행안부·기획처 차관,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, 법제처차장 및 지자체의 행정부시장·부지사

### □ 조정절차



※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행 의무가 있음